

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(제10조의2 관련)

공회전제한장치는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하여 정상 작동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다음의 각 성능기준 및 주요기능 이상이어야 한다.

성 능 기 준	주 요 기 능
가. 냉각수 온도가 설정 값 이하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은 정지되지 않을 것	- 엔진 정지를 위한 냉각수 온도 설정 기능이 필요
나. 차간거리 좁히기와 같은 저속 운전 상황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이 정지되지 아니할 것	- 엔진 정지를 위한 차량 속도 설정 기능이 필요
다. 일정 경사로 이상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이 정지되지 아니할 것. 다만, 경사로에서 제동력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- 도로의 경사도를 측정하여 설정 값 이상에서는 엔진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 또는 경사로에서 제동력 확보 및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필요
라. 공기압을 이용하여 제동하는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제동장치용 공기압이 설정 값 이하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이 정지되지 아니할 것	- 공기압 측정 및 설정 기능이 필요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량의 제동 및 정지 이후에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엔진이 정지되도록 할 것	- 차량 속도 및 제동 감지 기능과 차량 정지 후 엔진이 정지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 필요
바. 야간에 차량 및 엔진 정지 시 차량 식별을 위한 등화 시스템을 유지할 것	- 차량 및 엔진 정지 시 전조등은 소등되고, 미등 및 브레이크 등은 점등되는 기능이 필요
사. 엔진 재시동 시 고에너지 소비 보조 장치는 엔진 시동이 완료된 후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	- 엔진 시동 완료 후 전조등, 에어컨의 순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필요
아. 공회전제한장치의 사용여부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	- 운전 중 장치의 사용 여부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
자. 공회전제한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공회전 상태로 정차 시에 경보를 발생하도록 할 것	- 공회전 상태로 5분 경과 후 경보 신호를 발생하는 기능이 필요

차. 장치의 재시동을 위해 일정 횟수 이상으로 시동모터가 사용된 경우 경보를 발생하도록 할 것	- 시동모터 사용횟수의 저장 및 설정 기능과 시동모터 사용횟수가 설정 값 이상시 경보를 발생하는 기능이 필요
카. 공회전 정지 시간과 실시율(차량 정지 시간과 공회전 정지 시간의 비율)을 저장하고 표시하거나, 또는 원격으로 해당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	- 과거 6개월간 1일 공회전 정지시간 및 실시율 값을 저장하거나 원격으로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필요
타. 대도시의 도심지 주행모드를 반영하여 200km 이상 실제 도로를 주행하였을 때 장치 관련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을 것	- 실시율 등 주요 항목의 저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, 장치의 기능이 정상 동작함을 보여 줄 수 있을 것